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 가이드라인과 향후 추진일정

이번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주된 문의는 조합에서 중소기업 적합 · 품목을 신청하였는지,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진행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며 “그건 이렇습니다”를 통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 선정이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하여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1. 5. 3~27(금)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을 받았으며, 검토를 통해 9~10월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폐지

-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장치로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도입(’79)되었으나,
- 다음과 같은 부작용 등으로 인해 고유업종 지정 업종의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06년에 제도 폐지

- ① 사회적, 경제적 제조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이분적 구분의 어려움
- ②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보다 다수의 중소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 ③ 기술이나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주력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향상 미흡
- ④ 외국기업의 시장참여 및 외국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
- ⑤ 지정 전 진입한 대기업의 계속생산은 허용하며 신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기존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성과를 보장해 주는 부작용

나.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이 제기

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 선정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을 선정하고
 -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로 결정
- 주기적으로 대기업의 진입 및 사업이양 실태를 조사 · 공표하고, 대기업의 진출 · 확장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
 - 적합 업종 ·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R&D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

2. 추진경과

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추진(‘10.12~’11.4)

- 광업 ·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의 2,1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소효율규모, 1인당 생산량,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수입비중 등을 검토
- 전문가, 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7차례 TF회의를 개최)
- 대 ·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

나. 동반성장위원회에 연구용역 추진현황 보고

- 동반성장위원회에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고(2.23, 3.28)
- 적합업종 선정 실무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검토(3.22, 4.18)

II. 적합 업종 · 품목 선정 가이드라인(안)

1. 적합 업종 · 품목 선정 가이드라인(안)

가. 제도운영의 효율성(시장규모 및 중소기업 수)

- 시장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품목

나. 중소기업 적합성

- (최소 효율규모)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인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
- (1인당 생산성)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품목
- (종사자 비중) 해당 업종 · 품목의 전체 종사자(상시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품목

그건 이렇습니다

다. 부정적 효과 방지

- (소비자 만족도)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품질, 위생, 안전, A/S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되지 않는 품목
- (협력사 피해)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더라도 공급망(Supply Chain)에 있는 협력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품목
- (수입 비중) 원자재 공급, 생산, 수요 등이 국내에 집중되어 있어 적합 업종·품목으로 선정하여도 외국기업의 진출 또는 제품수입에 의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가능성이 낮은 품목
- (대기업 수출비중)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

라. 중소기업 경쟁력

- (매출액 대비 R&D투입 비중)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는 품목
- (경쟁력 수준) 기술수준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적합 업종·품목으로 선정하여 일정기간 보호할 경우 국내외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일반제조업분야) 접수결과

1. 신청개요

-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업단체,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5개이상 중소기업 등
- 나. 신청범위 : 신청대상 품목의 범위 : 일반제조업 분야의 품목 (서비스업 제외)
- 다. 신청기간 : 2011. 5.3(화) ~ 5.27(금)

2. 접수개요

- 가. 접수결과 : 267건
 - 표준산업중분류(2단위) : 21개 업종
 - 표준산업분류 업종(5단위) : 129개 업종
 - 광업·제조업통계 품목(8단위) : 234건 (총 접수 267건에서 중복신청 품목 33건 통합)

나. 신청형태 : 118개 기관(기업)

- 협동조합 및 연합회 : 75개 조합, 186건 신청
- 협회 등 기관단체 : 15개 단체, 47건 신청
- 개별기업 : 28개 기업, 34건 신청
- 신청지역 : 서울(197건), 경기(39건), 경남(2건), 대구(9건), 부산(1건), 울산(1건), 인천(1건), 전남(13건), 전북(2건), 충남(2건)

다. 주요 업종별 현황

제조업 연간 외국인력 도입쿼터

구분	업종 (중분류)	신청품목수	주요 신청 품목
식품	농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46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탁주 등
섬유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섬유사 염색, 직물염색, 끈 및 로프 등
화학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	산업용가스, 세탁비누, 계면활성제, 부동액 등
석유화학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	재생타이어, 플라스틱병, 폴리에틸렌필름 등
비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레미콘, 아스콘, 유리용기, 콘크리트블럭 등
금속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3	강관, 아연분말, 주물, 도금, 판금제품 등
전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	데스크탑PC, 블랙박스, 폐쇄회로카메라 등
의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	내비게이션, 광학렌즈, 선글라스, 안경테 등
전기	전기장비 제조업	22	LED, 조명장치, 에어컨정수기 등
기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금형, 밸브, 주차기, 냉동기, 정수기 등
기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	14	장난감, 인형, 마루용판재, 골판지 상자 등
합계	21	234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일반제조업분야) 향후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절차

〈예상일정〉

5.3~5.27

적합업종·품목 신청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업단체 등

5.28~6.3

접수·품목 분류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실무위원회 보고)

6월~8월

품목별 실태조사,
분석 및 의견수렴
/가이드라인 확정

전문기관 / 실무위원회

8월

실무위원회 검토중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안) 마련

마련동반성장위원회
심의·확정

사후관리